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년 1차 통합서비스지원분과 회의자료(1월)

구 분	통합서비스지원분과
협의체 사회적 비전 & 미션	비전 :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공동체 미션 :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통합분과 목표	연대를 통해 주민이 감동하는 통합서비스지원 체계 구축
전략과제	○ 수원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지원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서비스지원

○ 일　　시 : 2017. 1. 19.(목) 10:00 ~12:00

○ 장　　소 :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중회의실

○ 주요내용

1. 인사 및 공유

1) 새해 인사 및 기관별 행사· 정책 변동사항

2)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안내

3) 전차회의결과

2. 안건토의

1)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2) 통합서비스지원분과 2017년도 활동 계획

- 민관협력 공동사업추진, 연간 회의 일정 등

3) 동복지허브화 추진 지원 : 통합사례회의 참여 내용 공유

3. 차기회의 일정

1. 인사 및 공유

1) 새해 인사 및 기관별 행사· 정책 변동사항 공유

- 협의체 : 실무협의체회의 2/17, 대표협의체회의 2/27 또는 28

2)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안내

1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이란 ?

○ **(정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따라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이 적용대상에 해당

* (적용범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평가등 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므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적용대상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소관 '공무수행(직무관련성)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한하여 적용**

< 직무관련성 해석 내용 >

***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2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

○ **(적용범위) 공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법 제5조부터 제9조)

①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개 >

1. 불법 인허가 · 면허 등 처리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11.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15. 위 14가지의 유형에 대한 공직자등이 **지위·권한** 남용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개 >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대응요령)**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용하지 아니하면**(청탁에 따라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함**

※ 다른 공직자등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없음

- **단계적 확인절차**를 거쳐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청탁 거절 의사표시 등** 현명하게 대처 필요

※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정도의 의사표시 필요

√ 청탁 거절로 인간관계 단절이나 직 간접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므로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고민없이 거절하여 심리적 갈등 최소화

- **(신고·처리 방법)** 협의체 위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병행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조치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음.**

*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② **(금품 수수)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 약속 금지**

- 다만, 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공무수행사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을 제재조치**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금품 등을 반환·인도·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3) 전차 회의결과 : <붙임 1>

2. 안건토의

1)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 관련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 추진과제

〈단위 : 개/천원〉

구 분	총 계	지 역 사 업	보 편 사 업	비고
사업건수	74	53	21	· 지역사업 : 도 · 시비사업 · 보편사업 : 국비사업
사업예산	65,039,402	33,170,090	31,869,312	

※ 72개 사업 63,121백만원에서 → 74개 사업 65,039백만원으로 1,917백만원 증액(사유 : 국 · 도비 내시 변경 등)

- 평가주체 : 수원시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평가기간 : 2017. 1 ~ 2월
- 평가절차

내 용	역 할	일 정
평가 기획	사회복지과 협의체 사무국	2017. 1. 2.(월) ~ 4.(수)
사업 추진결과 작성, 제출	사업 소관부서	2017. 1. 5.(목) ~ 13.(금)
세부사업 평가	협의체 12개 실무분과	2017. 1. 16.(월) ~ 25.(수)
평가 내용 정리 · 발송	협의체 사무국	2017. 1. 31(화) ※설 연휴 1. 27.(금)~30.(월)
사업부서 의견 피드백	사업 소관부서	2017. 2. 1.(수) ~ 6.(월)
평가 TFT 확인, 평가	평가 TFT	2017. 2. 7.(화) ~ 10.(금)
실무협의체 검토	실무협의체	2017. 2. 17.(금) 예정
대표협의체 심의, 도 제출	대표협의체 사회복지과	2017. 2. 27 또는 28

2) 2017년 통합서비스지원분과 활동 계획

※ 2016년 분과 활동내용

- 사업명 : 수원시 사례관리체계 현황조사 및 정책 제안
- 당초 계획 대비 실행

추진계획	예산	추진실적	사업비
○ **목적 및 배경** –수원시 사회복지 기관의 사례관리체계 현황 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수원시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및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함. ○ **주요내용** –수원시 사례관리기관 체계 현황 조사 및 분석 –정책제안 보고서 작성 –타 분과 연합 정책제안 간담회 개최	605,000	○ **수원시 사례관리 기관 네트워크 조사** • 조사양식 논의 및 수정: 3~5월 • 1차 내용 취합 및 정리: 6~8월 ⇒ 유의미한 결과 도출 어려움에 따라 동복지허브화 추진 지원으로 변경 ○ **수원시 동복지허브화 추진 기관장 간담회** • 일시 : 2016.9.20.(화) 17:30 • 장소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 참여 : 복지기관관장 등 11명 ○ **수원시 동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민·관 간담회** • 일시 : 2016.10.13.(목) 14:00 • 장소 : 휴먼서비스센터 • 참여 : 동, 복지관 담당자, 통합분과 위원 60명	390,500

※ 출석률 : 전체 평균 61.5%

	통합서비스지원분과								
	출석률			참석			정원		
	합	민	관	합	민	관	합	민	관
1월	61.1%	56.3%	100.0%	11	9	2	18	16	2
2월	66.7%	75.0%	0.0%	12	12	0	18	16	2
3월	63.2%	61.1%	100.0%	12	11	1	19	18	1
4월	52.6%	50.0%	100.0%	10	9	1	19	18	1
5월	-	-	-	-	-	-	-	-	-
워크숍	42.1%	44.4%	0.0%	8	8	0	19	18	1
6월	68.4%	72.2%	0.0%	13	13	0	19	18	1
7월	75.0%	73.7%	100.0%	15	14	1	20	19	1
8월	77.3%	81.0%	0.0%	17	17	0	22	21	1
9월	86.4%	85.7%	100.0%	19	18	1	22	21	1
10월	68.2%	66.7%	100.0%	15	14	1	22	21	1
11월	68.2%	66.7%	100.0%	15	14	1	22	21	1
66.8%		**67.1%**	**61.5%**	**147**	**139**	**8**	**220**	**207**	**13**

--- 2017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 기준(안) ----------

○ 목　적

- 민관협력과 사회복지시설(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안 과제 발굴을 통한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 분과에서 제안한 사업을 상위 기구인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함으로써 실무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17년 방향

- 실무분과 사업의 책임성, 자발성 및 객관성 강화를 통한 민·관 협력의 선도적 모델 개발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시 보장협의체의 참여와 지원을 위한 분과별 지원모델 개발 및 발굴 추진

○ 사업내용

- 동 복지허브화 안착을 위한 시책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 지역의 현안 욕구 및 문제를 발굴·연구하여 정책 과제로 제안하는 사업
- 단일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적 욕구 및 업무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기관 연합 사업
- 분과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중 다른 사업에 비해 민·관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 수행절차

사업제출 (실무분과) ⇨ **타당성 검토** (실무협의체) ⇨ **사업수행** (실무분과) ⇨ **결과보고** (실무분과)

○ 추진일정

- 실무분과별 운영 방향 및 사업 논의 : 2016. 12 ~ 2017. 1월
-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계획 취합 : 2017. 1월 말
- 공동사업 선정 회의(실무협의체 회의) : 2017. 2월 중
- 사업 추진 : 2017. 3월 ~ 11월
- 결과보고서 제출 : 2017. 12월 초까지

○ 선정지표

구분	총	지역현안사업	파급효과 (주민복지기여도)	실현 가능성	연계협력 활성화	시책사업 준수
배점	100	20	20	20	20	20

○ 선정기준(안)

구 분		배점기준		비고
배점 기준		100점 만점		
선정기준점		70점 이상		
배점기준	총 점	100		
	지역현안 사 업	20	○ 계획 내용이 지역에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사업 여부(1점~8점)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또는 사회복지 유관기관의 참여도(1점~6점) ○ 사업계획 내용이 주민 욕구 등 객관성 있는 지표와 함께 제시되는 등 계획의 구체성 정도(1점~6점)	
	파급효과 (주민복지 기 여 도)	20	○ 사업목적의 적절성, 파급성 및 지역주민복지 증진에 어느 정도 유익한지 ? (1~10점) ○ 지역주민의 수혜 및 사회적 편익 증진에 대한 기여도(1~10점)	
	실 현 가능성	20	○ 사업성과 실현가능한 척도(목표)의 적절성 여부(1~5점) ○ 참여하는 위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역량(1~5점) ○ 사업규모 내용 재원확보(공공·민간)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1~5점) ○ 향후 우수모델 발전 가능성(1~5점)	
	연계협력 활 성 화	20	○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 정도(1점~8점) ○ 참여하는 분과위원의 업무 다양성(1점~6점) ○ 타 사회복지 유관 기관 연계 협력 여부(1점~6점) → 분과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	
	시책사업 준 수	20	○ 정부정책 및 수원시정 방침에 부합하는 정도(1점~8점) ○ 공적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 여부(1점~6점) ○ 공공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1점~6점)	

※ 70점 이상 : 사업추진 / 70점 ~ 50점 : 선 보완 후 추진 / 50점 미만 : 재검토

- 월별 활동 계획

월	통합서비스지원분과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모니터링	협의체 전체 행사	일정, 장소
1	*계획 확정, 제출	2016년도 시행계획 평가		
2	*분과 사업 공모, 심의			
3			전체 워크숍(3/2~3)	
4				
5				
6				
7		2017년도 시행계획 중간평가		
8				
9				
10	*분과사업 종료, 결과 보고서 제출	2018년도 시행계획 수립 검토	7기 협의체 구성	
11		2018년도 시행계획 수립 심의	활동결과보고대회 (11월말)	
12				

※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기초 작업 추진 예정

※ 협의체 전체 행사 : 대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7 민관협력 공동사업 계획서 양식>

(실무분과명)

사업명 _ OOO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2. 사업목적

○

○

3. 사업목표

○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대　　상 :

○ 주요내용 (개요)

5. 세부계획 (단위사업별 세부 계획)

1) 세부사업 1 :

○ 시행시기 :

○ 참여인원 :

○ 세부내용(활동) :

◦

◦

○ 추진방법 :

○ 참여기관 및 역할분담

2) 세부사업 2

6. 기대효과

❍

❍

7. 평가방법

목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8. 소요예산

(단위 : 원)

내용	금액	산출근거	비고(재원출처 등)
계			

9. 분과위원 명단

연번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3) 동복지허브화 추진 지원 : 통합사례회의 참여 내용 공유

구	동	기관	비고
장안구	파장동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율천동	연무사회복지관	
	조원1동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연무동	연무사회복지관	
권선구	세류2동	-	
	세류3동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금곡동	능실종합사회복지관	
	호매실동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구	동	기관	비고
팔달구	지동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우만1동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인계동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매탄2동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매탄4동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6년 제11차 통합서비스지원분과 회의록(12월)

일 시	2016. 12. 3.(목) 10:30~12:00	기록	임복희	확인	임유정, 김경순
장 소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중회의실				

총 21명중 12명 참석 57.14% - 관 0/1, 민간 12/20 (배석 별도)

참석자						
임유정	사회복지과 휴먼복지지원팀장	×	김경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	○
김은신	연무사회복지관 부장	○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
김윤희	수원 YWCA 소규모요양시설장	×	전영임	영통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김지연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팀장	○	박윤미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팀장	○
박명옥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사무국장	×	홍현희	우만지역자활센터 실장	×
송은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사회복지사	○	김현경	서호노인복지관 재가복지팀장	×
박미애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	소현이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박태화	수원지역자활센터 실장	○	서문지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
이상만	무봉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홍진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
김용옥	버드내노인복지관 과장	×	전혜연	SK청솔노인복지관 팀장	×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대표)	×	한승일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
			임복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배석	○

회의주제 및 안건

1. 인사 및 공유

1) 기관별 행사 및 정책 변동사항

2) 전차회의결과

2. 안건토의

1) 동복지허브화 추진 지원 : 통합사례회의 참여 내용 공유

2) 2016년 통합서비스지원분과 활동 평가

3) 2017년 활동 계획 논의

3. 차기회의 일정

회의결과

1. 인사 및 공유

1) 기관별 행사 및 정책 변동사항

- 협의체 : 2차 휴먼복지포럼 12/9
  활동결과보고대회 12/14, 호텔캐슬
- 연무종합사회복지관 : 30주년 행사 12/16
- 무봉종합사회복지관 : 후원의밤 12/14 18:00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 후원의밤 12/8
- 사회복지협의회, 사협회 : 사회복지경진대회 12/15
- 우만종합사회복지관 : 주민송년회 12/20
- 호매실장애인복지관 : 호감제 12/16, 되살림가게 오픈

2) 전차회의결과 공유 : 이의없음

2. 안건토의

1) 동복지허브화 추진 지원 : 13개 동 통합사례회의 참여 내용 공유

※ 공통사항

- 동 통합사례회의 정례화 필요하며, 일정 변경시 사전 공유되어야 함.

- 기관차원에 개입하나 사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정보제공,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해야 함. 동의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이 기관 참여자의 역할임.

- 동별로 사례관리 인식도 다름. 사례에 대한 목표 수립할 때 깊이있는 고민이 아니라 공공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피상적이고 단순한 계획을 수립함. 문제 해결이 돼서가 아니라 제공한 자원, 서비스가 없어서 종료되는 경우 있음.

- 사례에 대해 민관이 같이 계획 수립하는 과정 필요

구	동	기관	내용
장안구	파장동	무봉종합사회복지관	○ 복지관 지역조직담당도 함께 회의에 참여함. ○ 11월 회의는 단순사례로 간단한 자료로 회의 - 기초현황 등 세부 자료를 사전에 공유한다면 더 많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내용 뿐 만 아니라 협력, 연계 필요
	율천동	연무사회복지관	○ 동에서 해야하는 사례, 구에 이관해야하는 사례에 대해 판단 어려움. 통합사례관리사가 판단한다고는 하나 판단 어려움.
	조원1동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연무동	연무사회복지관	
권선구	세류2동	임유정팀장님	
	세류3동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세류동의 경우 청장년 1인 가구가 많음. ○ 복지관과 지역이 멀다보니 지역적 한계 존재. 연계시 지역적 안배 필요함 ○ 기관 참여 역할을 알고 있으나, 지역자원이 없는 경우 복지관 및 동 입장에서는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낌.
	금곡동	능실종합사회복지관	○ 12월부터 호매실장애인복지관에서 담당
	호매실동	능실종합사회복지관	○ 12월부터 호매실장애인복지관에서 담당
팔달	지동	우만종합사회복지관	○ 동에서 연락이 없었음(10월부터 없었음)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동에 확인

구	동	기관	내용
구	우만1동	우만종합사회복지관	○ 사전 자료공유 및 회의 공문 발송 잘되고 있음 ○ 회의당일 파출소, 방문보건센터, 팔달구청 등 참여하였으며 동 내부회의시에도 기관에 협조요청되어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임 ○ 우만1동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례관리 대상자임. 사례관리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고민. 사례 이관에 대한 피드백, 자살 개입 방법, 대상자 라포형성 등에 대한 슈퍼비전 필요
	인계동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내용 사전 공유. 방문보건센터, 구청, 통합사례관리사 참여함. 복합사례 동에서 노인정신건강센터 연계하여 사례회의에 같이 참여 함 ○ 12월 첫째주 연락이 없었음
영통구	매탄2동	광교종합사회복지관	○ 복지관에서 부장님과 2명 참여함 ○ 통합사례회의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적서비스 잘 정리하고 많이 시도되고 있음. 기관에서는 자문의 역할 수행. ○ 동에서는 자원연계에 대해 궁금해 함.
	매탄4동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복지관 부장님이 참여하였음.

2) 2016년도 통합서비스지원분과 활동 평가

- 사업추진 : 당초 계획 대비 실행 검토
- 출석률 : 통합분과 66.8%(11월 기준)
- 1월 회의시 개별 출석 체크. 1회 결석시 5천원 벌금, 참여각서 작성

3) 2017년도 활동 계획 논의

- 2017년에도 동복지허브화 추진 지원에 중점 필요
-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할 수도있는가? 분과 고민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한 개 사업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음.(2개의 TFT운영)
- 2017년 복지기관의 역할 고민. 동에서는 복지관을 자문보다 자원의 접점의 역할 기대하고 있음. 자문과 지원 동시 필요한 상황
- 자문이 필요한 동, 지원이 필요한 동 동별 특성이 다른 상황임
- 동별 특성이 달라 동에서 원하는 사례관리, 사례회의 지원 필요하며, 각 동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원 필요. 잘되는 부분 역량 강화
- 동별 특성, 진행 역량 차이 있음. 해당 동들이 거점이 될 수 있게끔 지

	원 필요, 민에서는 모니터링 역할 - 자문 뿐 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역할 고민 -> 관심있는 기관이 공모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임 - 동이 확대될 경우 기관을 거점으로 (인근동 3개 씩 그룹) 연합형태도 고민할 수 있을 것임. - 수원병원의 경우 동복지허브화 추진 이후 동의 변화가 느껴짐. - 어디까지 사례관리를 개입해야할지 명확한 규정, 매뉴얼이 없음. 동별 특성이 다르지만, 민관협력으로 같이 해야할 일임. 동별 특성을 파악하고 동사례관리 현황을 파악해서 정책 제안을 해야함 - 동복지허브화 안착을 위한 동 통합사례회의 정책제안 민관이 함께 갈 수 있는 역할 정책 제안 동복지허브화 추진 세미나 (동 사례회의 사례, 변화, 성과를 중심으로) FGI 성과분석 등 정책제안이 아니라 보고회, 결과물이 될 수도있음 - 2017년 사업 : 동복지허브화 안착을 위한 활동 => 동 확대에 따른 민관협력 역할 => 동 연합 형태 고민 - 3월 : 진행, 4~5월 : 준비, 6월 발표(보고회), 7월 확대된 동 접근 논의 **3. 차기회의 일정** **- 1월 19일(목) 10:00, 휴먼서비스센터**